

## 건축사는우리의 상을 이자인합니다.

## 서울특별시건축사회

1965, 10, 23 설립

회원과 함께하는 서울건축사회

수신자 회 워

(참 조)

제 목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개정알림

- 1. 건축문화발전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.
- 2.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(시행 2023.1.1.)에서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으로 개정되어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다 유 -

## 주요내용

가. 건축물 에너지 평가서 공개 대상 건축물의 범위 확대(제13조제1항) : 공동주택 전체 세대수 15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확대

나.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표시 대상 건축물의 범위 확대(별표 1) : 인증 결과를 표시해야 하는 건축물에 '「공공주택 특별법」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소유하거나 관리 주체인 건축물'을 추가하고, 인증 표시 대상 건축물의 연면적 기준을 '1천제곱미터 이상'에서 '5백제곱미터 이상'으로 하향하여 대상 건축물을 확대

- 붙임 1.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개정문개정이유.
  - 2.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. 끝.

## 서울특별시건축사회



담 당(기안) **김혜림** 건축팀장 **이아영** 건축회원국장 **차재엽** 사무처장 **김상준** 부회장 **전영호** 회 장 **김재록** 

협 조 자

시 행 건축 2250 - 6 (2023. 1. 3.) 접 수

우)06643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317 (서초동), 7층 www.sira.or.kr

전 화 02-523-2282 전 송 02-523-2284 www.facebook.com/siraseoul